

변경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변제 일정 공지

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2018년 11월 2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인가 받은 변경회생계획에 따른 회생채권 일시 변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
1. 현금변제분

- 변제일자 : 2018.12.19 (수)
- 변제 기준

구 분	내 용
대상 채권	확정된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 中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현금 변제분
대상 채권자	위 대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中 현금변제액 수령을 위한 계좌정보가 확인된 채권자

2. 출자전환분 (주식변제)

- 주식교부일자 : 2018.12.26 (수)
- 주식상장일자 : 2018.12.27 (목)
- 변제 기준

구 분	내 용
대상 채권	확정된 회생채권, 회생담보권 中 변경회생계획안에 따라 확정된 주식 변제분
대상 채권자	위 대상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中 주식 교부를 위한 실명정보가 확인된 채권자

- 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주식교부를 받지 못한 경우
 - ① 2017년 1월 13일 인가 받은 원 회생계획 및 2018년 11월 2일 인가 받은 변경 회생계획상 출자전환 대상 채권자 中 실명확인 서류 미제출로 인해 명부주주로 등록되지 아니한 채권자 (주식 미발행)
: 2019년 매 분기 두번째 달 (EX: 1분기-2월, 2분기-5월) 에 실명확인 서류 제출에 대한 공지를 하며, 실명확인 서류가 접수된 다음 분기의 첫번째 달 (EX: 2월 서류접수시 4월)에 주식교부 예정.
 - ② 실명정보가 확인되어 명부주주로 등록 (주식 발행) 되었으나 주식 입고대행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행된 주식이 계좌로 입고되지 아니한 채권자 (2017년 1월 13일 인가 받은 원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주식을 교부 받은 이력이 있는 채권자가 이에 해당합니다.)
 - i 당사의 명의개서대행기관인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필요서류 문의 후 직접 방문 입고하거나,
 - ii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사로 명의개서 및 교체발행 청구서 및 위임장을 송부하여 당사로 주식 입고 위임

※ 상기 일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공지 하겠습니다.